

##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」 관련 교수-학생 간 유의사항 안내

### ■ 청탁금지법

- 법률 :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
  - 시행령 :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
  - 제정 목적
    -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을 방지
    -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제한하여 공정성과 신뢰 확보
  - 대상 범위
    -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 (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).
    - 특히,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식사, 다과,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
- ※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

### i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주요 위반 사례 등 안내

#### □ 주요 위반 사례(출처: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(국민권익위원회, 2023)》

**(사례1)** A대학교 예술·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(석사 재학 중)은 2019.5.13.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A대학교 예술·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○○○에게 스승의 날 선물로 금품(백화점상품권)을 제공

⇒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(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47, 2020.4.2.)

**(사례2)**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○○○은 석·박사 학위논문 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학생 7명으로부터 선물, 케이크, 식사를 제공받음

⇒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(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과14, 2018.12.10.)

#### □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·응답(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FAQ)

Q : 대학원생이 석·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?

A: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·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

Q : 석·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, 숙박비,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?

A :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

## □ 결론

대학원생이 지도교수 등 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청탁금지법)」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큼.

이는 가액 기준 이하의 선물이라 하더라도,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간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, '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목적' 등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물 제공은 금지됩니다.

## ii 교수와 학생 간 선물·식사 제공 관련 유의사항

## □ 원칙

- 교수와 학생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청탁금지법)」상 직무관련자 관계에 해당합니다. (교수는 학생을 평가·지도·심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, 항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.)
- 따라서 교수가 학생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.
- 법률은 '주는 사람'과 '받는 사람' 모두에게 적용되므로, 학생이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.

## □ 적용 사례

- 논문 지도교수가 제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경우: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법 위반 가능성 큼
- 졸업 축하 명목으로 시계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: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존재

## □ 결론

- 교수 → 학생 :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
- 교수와 학생 모두 법 위반 시 제재 가능
- 학생이 수수한 경우에도 함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교수-학생 관계에서는 선물·식사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됨